

#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

##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특징

###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정의

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

- 가정 및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의 청소상태를 점검하거나 필터 등 소모품을 교체하는 등 대여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 활동 수행

· **직업 예시** 정수기, 비데, 공기청정기, 연수기 및 에어컨 등 방문점검원

### 주요 사고유형

대여제품의 필터교환, 제품의 청소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중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, 주변 시설물과 부딪힘, 고온의 물체 접촉 및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.



미끄러져 넘어짐



부딪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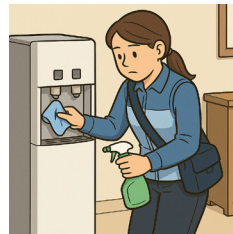
고온의 물체 접촉(화상)



고객의 폭언 등

### 업무 특성

- 대여제품의 필터교환, 점검 및 청소를 위해 다양한 장소(주거지, 상가, 사무실 및 공장 등)를 방문, 낯선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.
- 고객의 약속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다.
- 낯선 고객과의 접촉이 많아 마찰, 폭언·폭행, 범죄 등에 노출되기 쉽다.
- 필터나 연수기 등 관련 물품의 무게가 있어,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.
- 폭염, 한파, 미세먼지, 폭우 등 환경적 요인에 직접 노출된다.



## 주요 작업 및 유해·위험요인



### 이동

#### 작업내용

· 대여제품의 담당구역 고객과 약속시간을 정하고 차량이나 도보로 방문

#### 유해 위험요인

· 도보 이동 시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· 계단 이동 시 발을 헛디려 넘어짐  
 · 장시간 도보 이동 시 족저근막염 발생 · 차량 이동 시 교통사고



### 대여제품 점검

#### 작업내용

· 대여제품의 필터교환과 제품의 청소 · 대여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

#### 유해 위험 요인

· 중량물 운반,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반복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
 · 모서리 등 날카로운 면 접촉에 의한 베임  
 · 정수기 온수 및 가열 부위 접촉에 의한 화상



## 주요 재해사례



### 부딪힘



주차장 내 도보 이동 시 차량과 충돌

### 예방 대책



- 어두운 지하주차장 특성을 고려 충분한 조도 확보
- 보행전용 통로 이동
- 차량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 의복 착용



### 떨어짐



제품 상부 서비스 점검 중 발판(의자 등)에서 떨어짐

### 예방 대책



- 작업발판은 평탄한 곳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
- 플라스틱 박스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 지양
- 작업 전 발판 이상유무 점검



### 근골격계 질환



하부 청소를 위해 제품 이동 중 근골격계질환 발생

### 예방 대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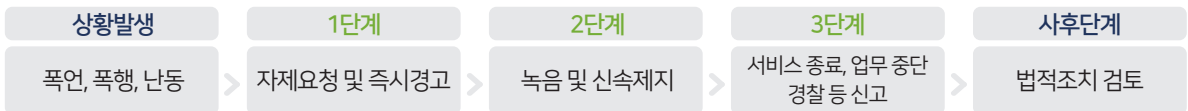
- 중량물을 들 때 무게를 조정하고 무거운 물건은 2인 1조로 작업
- 물건을 들 때 올바른 자세로 중량물 운반



## 사망사고 예방 'Safety Alert Message(SAM)'

### 대여제품 방문점검원

- ✓ 차량 운행 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(과속, 난폭운전,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, 안전거리 미확보 등)
- ✓ 도보 이동 시 전화 통화 등 주의력을 흐트러지는 행위 지양
- ✓ 고객의 폭언·폭행 등 대응절차 알기



### 제품대여업자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

- ✓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
- ✓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
- ✓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
- ✓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고객 등 제3자의 폭행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

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, 휴게시간의 연장,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, 관할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·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소,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

##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

1.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)
2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), 제68조(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)
3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)
4.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제7항